

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 조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2. 4. 17

손 판 암 의원 외 5인

나. 회부일자 : 1992. 4. 17

다. 상정일자 : 1992. 4. 21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 : 별첨안 참조

나. 주요골자 : 별첨안 참조

3. 전문위원 검토 보고의 요지 : 별첨보고서 참조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심사결과 내용참조

5. 토론요지 : 심사결과 내용

6. 심사결과 : 구본춘위원의 동의로 제4조(자격)에 단서 규정을 “다만 사하구 거주자를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적임자가 없을시는 부산직할시에 거주하는 자를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”로 신설함을 수정의결하였으며 제10조(검사위원의 위촉및 해촉) 제1항에 단서 규정을 “단 제4조 단서조항에 해당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”로 신설함을 수정 의결하였고 여타 조항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.